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17 발의연월일: 2021. 1. 15.

발 의 자:김희국·김석기·김상훈

강기윤 · 김용판 · 류성걸

김예지 • 구자근 • 추경호

최승재 • 박형수 • 정희용

강대식 • 윤재옥 • 김영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,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·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,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

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·부담시키고 있어,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건설업계에 서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는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 을 붕괴시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.

이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"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"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,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항 후단 중 "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"을 "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8조(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 제28조(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 자담보책임) ① ~ ③ (생 략) 자담보책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수급인" 은 "하수급인"으로, "발주자"는 "수급인"으로, "건설공사의 완 공일과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"은 "하수급인이 시공한 건 -----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 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는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먼저 도래한 날"로 본다.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-----